

제349회 임시회
2016. 7. 14.(목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○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6년 6월 29일
- 회부일자 : 2016년 6월 30일

3. 개정이유

-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,
- 주민참여예산연구회와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근거마련 등 위원회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규정 신설(안 제11조)
 -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함
-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및 운영협의회의 역할 및 운영방법 규정신설(안 제18조, 제19조)
 - 연구회 및 운영협의회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, 구성 및 역할,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 등을 규정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 및 같은 법

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되었음.

- 동 조례안은,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·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·운영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6조제3항에 따라,
 - 주민참여예산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함)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신설
 -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 설치
 -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방법, 정책수립, 연구개발 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·운영 등 조례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- 주요 개정 내용과 검토의견

- 안 제11조제3항은, 위원회 위원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함.
(현행) ~ 연임할 수 있으며,
(개정) ~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⇒ 동 개정 조항은,

위원회 위원은 예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청북도 예산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의 자격요건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,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재정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참여예산제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.

- 즉, 개정을 통해 위원회에 참여하는 도민의 수가 확대되고, 예산 교육을 통해 도정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며, 대부분 타 시·도에서도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안 제11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한 규정과 관련해 적용대상 및 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바, 부칙에

적용례를 두어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- **안 제13조는**,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함.

⇒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총 6개 분과(일반행정, 복지여성, 문화체육, 경제환경, 농정, 안전건설)로 구성되어 있으며, 분과별로 위원회 위원들이 각각 10명씩 배정되어 해당 도 실·국과의 개별 회의를 통해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, 주민의견 우선순위 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.

- 분과위원회는 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민의견수렴 절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해당 도 실·국에 전달하는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바, 분과위원회의 설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기능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사료됨.

- **안 제18조는**,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방법, 정책수립, 연구개발 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.

⇒ 현행 조례 제18조에 연구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위원들로부터,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구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, 2015년 4월 당연직(분과위원장), 6명과 위촉직(지방재정분야 전문가, 사회단체 관계자 등)위원 8명 등 총 14명을 위촉해 운영 중에 있음.

※ 現 연구회 위원 중 위촉위원 임기 : 2015. 4.23 ~ 2016. 12.31

- 현행 조례 제18조에는 연구회를 둘 수 있다는 근거만 있을 뿐,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.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, 연구회의 구성·운영 및 기능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연구회 위촉직 위원은 현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이고, 관련 분야의 전문가

풀(Pool)이 많지 않고, 연구결과의 누적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, 연구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, 한 차례만 연임으로 제한하는 것은 제반 현실과 연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,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- 또한, 現 연구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1년 8개월로 위촉되어 있어, 개정안에 규정된 2년에 미치지 못하는 바, 現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어 임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
- **안 제19조는**,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운영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함.

⇒ 운영협의회는 위원회의 대표성을 가진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(6명)으로 구성하여,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을 조정하고, 일정 등과 관련된 사안들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, 행정 및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됨.

- 다만, 운영협의회는 심의 기능이 위원회 기능 중 일부를 침해하지 않도록 운영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다음 번 개최되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설명하도록 시행규칙 등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
- **안 [별표]의** 분과위원회 소관부서의 주관실국을 현행 균형건설국에서 재난안전실로 변경함.

⇒ 도 본청에 재난안전실이 2015년 7월 설치되어 도 재난안전관리 사무를 총괄·조정하고 있는 바, 분과위원회 안전건설분과의 주관실국을 현행 균형건설국에서 재난안전실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(현행) 균형건설국(균형발전과)

(개정) 재난안전실(안전정책과)

<참고자료>

□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현황

○ 구성현황

- ▶ 인 원 : 60명
- ▶ 성 별 : 남성 33명, 여성 27명 (여성위원 비율 45%)
- ▶ 지역별 : 청주 36명, 비청주권 24명 (비청주권 비율 40%)
 충주 4, 제천 4, 보은 3, 옥천 2, 영동 1, 증평 1, 진천 5,
 괴산 2, 음성 1, 단양 1

○ 위원 위촉 방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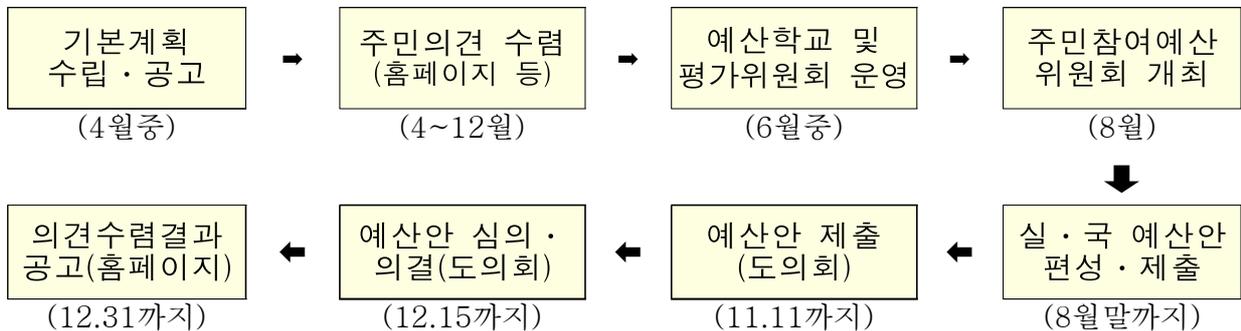
공개모집	시장·군수 추천	비영리민간단체	실국·부서 추천
22명	11명	13명	14명

○ 임 기 : 2016. 2. 24. ~ 2018. 2. 23.(2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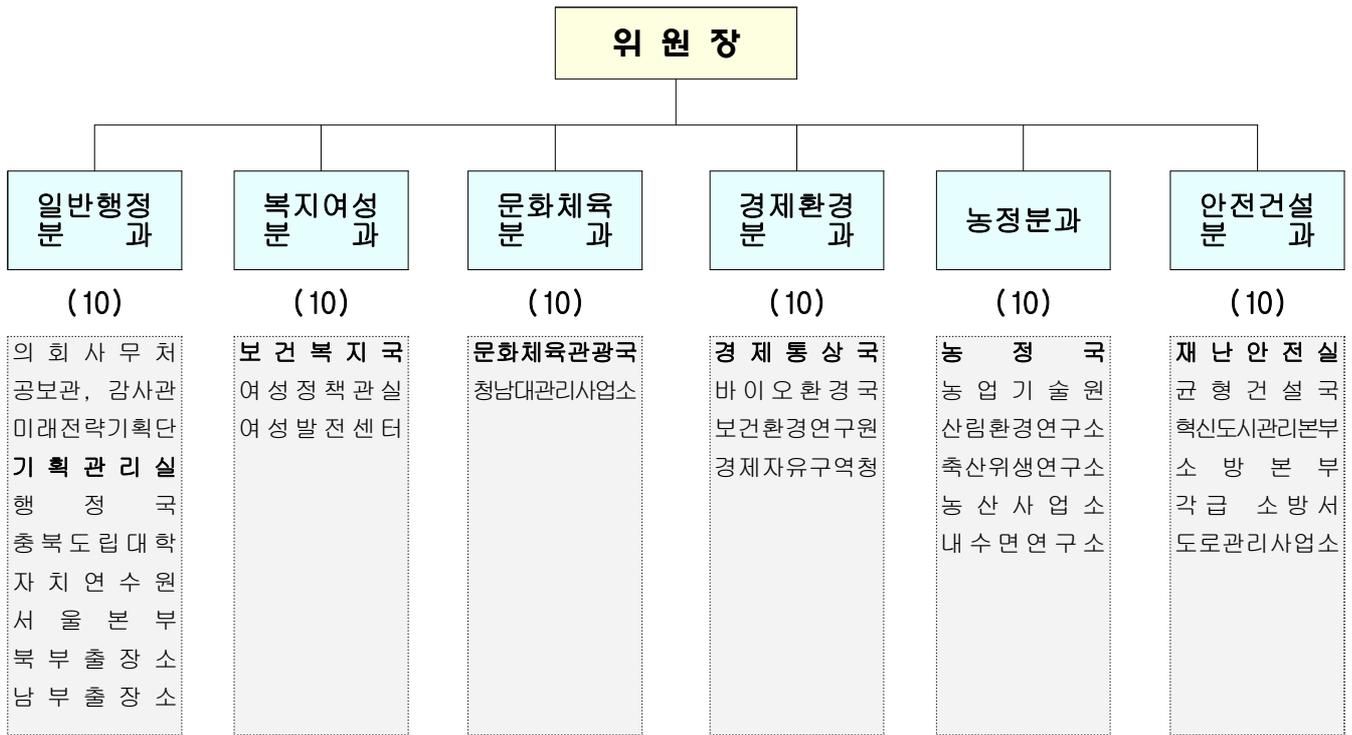
□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할

- 도 재정운용의 중점 추진사항 및 기본방향에 대한 의견제출
-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수렴(재정투자사업에 한함)
 ※ 국고보조사업 및 경상적 경비, 인건비 등 법적·의무적 경비 제외
- 실·국에서 제시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
- 기타 예산편성과 관련한 건의 등

□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절차



□ 위원회 구성 현황 (개정안)



□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교육 현황

년도	회수	내용	비고
2011	1	○ 주민참여예산학교(9.27) : 54명	제1기 위원회
2012	1	○ 주민참여예산학교(6.28) : 40명	제1기 위원회
2013	1	○ 주민참여예산학교(4.26) : 36명	제1기 위원회
2014	1	○ 주민참여예산학교(6.30) : 38명	제2기 위원회
2015	1	○ 주민참여예산학교 : 메르스로 취소 ○ 도시군 합동 도민참여예산워크숍(9.4) : 48명	제2기 위원회
2016	1	○ 주민참여예산학교(2.24) : 50명	제3기 위원회